

(주)머스트자산운용 신용정보 활용체제

제정 : 2015.12.11
1차 개정 : 2017.03.14
2차 개정 : 2017.07.24
3차 개정 : 2021.07.23
4차 개정 : 2023.09.01
5차 개정 : 2025.02.18
6차 개정 : 2025.03.26
7차 개정 : 2025.10.21
8차 개정 : 2026.04.13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1조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,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I.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

1. 이용목적

- 계약권유
-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계약체결 및 유지
- 사고조사, 분쟁해결, 민원처리
-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
2. 신용정보의 종류

아래의 정보 중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

가. 식별정보

-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,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등),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, 법인등록번호,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 성명 등

나. 신용거래정보 :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, 기간,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

다. 금융질서문란정보

-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

라. 신용능력정보

- 개인의 직업, 재산·소득 규모, 투자 경험, 재무상태·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, 금융 지식 이해도·위험에 대한 태도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

마. 공공기록정보

- 국세, 지방세, 관세, 과태료,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,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

등록된 사실,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,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,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

II. 제공대상자,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1. 제공대상자

- 가.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
- 나.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공 가능한 기관 등

2.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

- 가.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·수집·보관·관리·활용
- 나.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

3.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식별정보, 개인신용거래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, 신용능력정보, 공공기록 정보 중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공 가능한 정보

III. 보유 및 이용기간,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

- 1. 보유 및 이용기간 :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간 및 고객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제공 중단을 요구한 때까지 보유 및 이용
- 2.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: 전자적 파일 형태로 지정되는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

IV.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:

수탁자	위탁 업무
우리펀드서비스(주) 한국펀드파트너스(주)	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

V.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

- 1. 본인신용정보 제공·열람청구권
 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본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2.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
 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3.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
 -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4. 개인신용정보 제공·이용 동의 철회권

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 동의를 한 경우 방문, 유무선통신,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5.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요구권

- 신용정보주체는 법 제38조의3에 근거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 종료 후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분리 보관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관리하여 그 결과에 대해 통지합니다.

6.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요구권

- 신용정보주체는 상거래관계 설정의 거절이나 중지 시, 그 근거가 된 신용정보, 해당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·주소·연락처 등을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7.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

- 신용정보주체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8. 연락중지 청구권

- 신용정보주체는 당사가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VI.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인 / 고충처리 및 상담

1.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 :

- 준법감시인 최형준
- 연락처 : 02-578-5080
- E-mail : hjchoi@mustinvestment.com

부칙(2015.12.11)

본 신용정보 활용체제는 2015.12.11 부터 시행 한다.

부칙(2017.03.14)

본 신용정보 활용체제는 2017.03.14 부터 시행 한다.

부칙(2017.07.24)

본 신용정보 활용체제는 2017.07.24 부터 시행 한다.

부칙(2021.07.23)

본 신용정보 활용체제는 2021.07.23 부터 시행 한다.

부칙(2023.09.01)

본 신용정보 활용체제는 2023.09.01 부터 시행 한다.

부칙(2025.02.18)

본 신용정보 활용체제는 2025.02.18 부터 시행 한다.

부칙(2025.03.26)

본 신용정보 활용체제는 2025.03.26 부터 시행 한다.

부칙(2025.10.21)

본 신용정보 활용체제는 2025.10.21 부터 시행 한다.

부칙(2026.04.13)

본 신용정보 활용체제는 2026.04.13 부터 시행 한다.